

면사품위판정법

본 검사소에서는 최근에 현행면사품위표준을 작성하여 각 면방공장에 배부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사품위반정요령을 해설하여 업계의 참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먼저 금반 배부한 면사품위표준은 면사품위에 대한 한도견본(하한을 나타내는 견본)으로써 그 구성을 보면

35~49's 1, 2, 3호 및 코마사 4매

23~34's 1, 2, 3호 3매

14~24's 1, 2, 3호 및 사반4

호와 짝지 및 넷프4호 5매

13's이하 1, 2, 3호 3매 계 15매

로 되어 있으며 이 중

35~49's의 코마사견본 1매와 14~24's의 4호견본 2매 계 3매는 현재 수출검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실제로 검사에 적용하는 예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추가 제작한 것이다.

면사의 품위를 판정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시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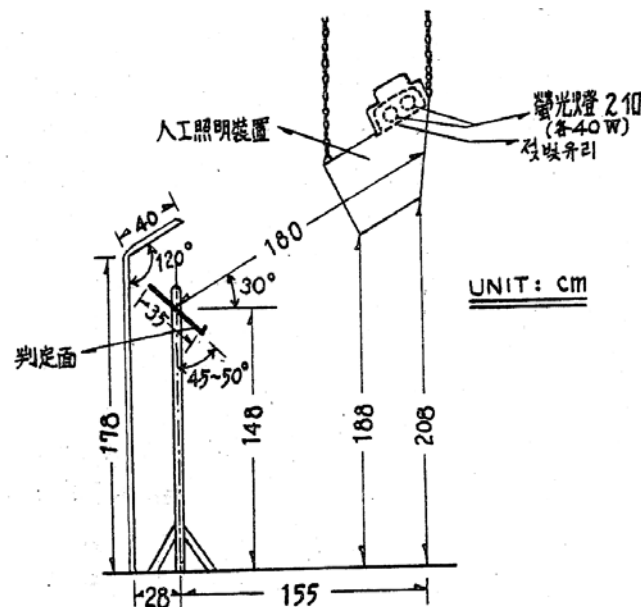
KS K 1104 “면사의 검사표준” 또는 KS K 8001 “수출용 면사의 검사표준”에 의하여 샘플링 한 항크(40 항크)나 치이스 또는 콘 (10개)중에서 품위검사용으로 선정한 5개를 시료로 한다.

2. 사조판에의 권취

위의 시료중 취급에 의하여 품위가 손상된 부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미리 완전히 풀어버리고 난 후 $28 \times 15\text{cm}$ ($11 \times 16\text{inch}$)의 무광흑색사조판 5매에 각 시료로부터 약 $100 \times 0.9144\text{m}$ (100yd)(6's이하의 단사 또는 12's이하의 쌍사(합연사)에 대하여는 약 $50 \times 0.9144\text{m}$ (50yd)씩을 2.54cm(1in)간 20본(6's이하의 단사 또는 12's이하의 쌍사(합연사)는 10본)의 간격으로 균일하게 권취한다.

3. 판정조건(그림 참조)

3.1 판정은 암실에서 행하며 필요한 장치일절을 반사면(백색)과 필요한 장치일절을 반사면(백색)과 유리 이외는 모두 무광흑색으로 도장하여 불필요한 광선의 간섭을 방지한다.



<그림> KOTITI의 사료품위판정장치

3.2 사조판과 표준을 나란히 놓은 반면(판정면)은 사조판의 윗 가장자리가

판정자의 눈 높이가 되도록 하고 수직면에 대하여 $45\sim 50^\circ$ (3.3과 3.4의 조명 조건하에서 사조판의 잔털이 약간 일어나 보일정도)로 기울인다.

3.3 조명으로 자연광선을 이용할 때에는 북창광을 채광하여 수평면에 대하여 약 30° 각도로 입사토록 하고 판정면상의 밝기는 일정조도($150\sim 200\text{Lux}$)가 되도록 한다.

3.4 밀광등에 의한 인공조명장치를 이용할 때에도 입사각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약 30° 가 되도록 하고 일정조도($90\sim 100\text{Lux}$)를 유지한다(전원전압에 유의)

3.5 판정자의 눈(표준시력일 때)과 판정면중심과의 거리는 사반판정시는 120cm내외, 딱지 및 넷프 판정시는 60cm내외로 한다.

4. 판정방법

4.1 사반의 판정방법

4.1.1 사반은 사조판을 3의 조건하에서 관찰하였을 때 판면이 실의 굵기 부동으로 인하여 얼룩져 보이는 정도를 가지고 판정하는데 그 정도가 경미할수록 좋은 것이다.

4.1.2 판정에 앞서 각 사조판의 표이

양면중 사반이 나쁜 쪽을 택하여 그 중 좋은 것으로부터 순차로 판정면상에 배열하고 여기에 해당번수의 면사품위표준 1, 2, 3호각호를 전체로서의 순위가 맞도록 삽입한다.

단, 표준과 동위의 사조판이 있을 때에는 표준은 그 동위의 사조판과 하위에는 표준은 그 동위의 사조판과 하위의 사조판사이에 삽입한다.

4.1.3 판정은 배열한 사조판과 표준을 규정된 위치(판정자의 눈과 판정면의 거리는 120cm내외)에서 관찰하여 순위가 정확함을 확인하고 그 성적이

표준의 1호이상인 사조판은 1호

표준의 2호이상 1호미달인 사조판은 2호

표준의 3호이상 2호미달인 사조판은 3호

표준의 3호미달인 사조판은 3호에 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4.2 짝지 및 넷프의 판정방법

4.2.1 짝지 및 넷프는 사조판을 3의 조건하에서 관찰하였을 때 판면에 나타나는 넷프의 크기 및 수의 대소 및 다소를 가지고 판정하는데 그 크기 및 수가 적을수록 좋은 것이다.

4.2.2 판정에 앞서 각 사조판의 표이양면중 짝지 및 넷프가 나쁜 쪽을 택하여 사반판정시와 동일한 요령으로 판정한다(즉, 판정자의 눈과 판정면의 거리는 60cm내외)

5. 채점방법

5.1 사반의 채점방법

5.1.1 KS K 1104 또는 KS K 8001에 의하여 채점하여 각 호의 점수와 합계점수채점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적	1호	2호	3호	3호에 달하지 않는 것
점수	30	25	20	10

즉, 사조판상의 사반성적이 판정결과 3계급에 이를 때에는 5점, 4계급에 이를 때에는 10점을 합계점수에서 감점한다.

5.2 짝지 및 넷프의 채점방법

5.2.1 사반의 채점방법과 동일한 요령에 의하여 짝지 및 넷프의 판정결과에 대하여 채점한다.

5.3 위에서 채점한 결과 “사반”이나 “딱지 및 넷프”중 어느 하나 또는 양 쪽이 공히 합계점수가 90점 이상으로서 표준의 3호에 달하지 않는 사조판이 있거나 또는 합계점수가 90점 이상 115점(28's 이상의 세사는 100점)미만인 때는 재차 시료중의 다른 임의의 향크, 치이스 또는 콘으로부터 5매의 사조판에 실을 권취하여 앞의 요령과 같은 방법으로 재판정한다(주 품위 또는 기타 항목이 최저기준 미달로 인하여 불합격되는 경우는 재판정의 필요가 없음).

5.4 재판정을 하였을 때는 양판정에 의한 합계점수를 “사반”과 “딱지 및 넷프”에 대하여 각각 평균하여 다음 방법에 의하여 5점단위로 끝맺는다.

평균치의 정수제1위(소수점이하 절사)가

0~2일 때는 평균치의 정수제1위를 0

3~7일 때는 평균치의 정수제1위를 5

8~9일 때는 평균치의 정수제1위를 0으로 하고 제2위를 하나 높인다.